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도희재 의원 외 6인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재 법령에 맞게 직무의 정의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직무” 정의 삭제(안 제2조)

다. 부적절한 기호 삭제(안 제1조, 제5조,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12. 17. ~ 12. 21.)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인용 법조문 정비와 “직무”의 정의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의원 상해 시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